

2025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FAQ

I. 일반사항

Q1.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학교포탈의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전산입력(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PDF파일 업로드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출력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PDF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부 증빙자료만 재무회계팀(울곡관 310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 시스템에 업로드한 PDF파일은 별도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오입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는 반드시 PDF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2. 2025년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발급되나요?

A :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6년 3월 10일(국세청신고) 이후부터 AIMS 급여-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9이후) 메뉴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3.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A :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 내 연말정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2026년 5월에 별도로 개인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교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인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신고가 되며 공제항목이 적으므로 일부 징수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Q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증빙도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 **기본적인 신고서 등은 전산접수로 진행되므로 원본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PDF파일 이외의 증빙이 필요치 않은 경우 출력물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부양가족의 입대 혹은 국외체류 등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못하여 본인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A : 해당 부양가족의 별도 PDF파일을 받으셔서 동일하게 PDF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파일 업로드 가능)

Q6. 공제항목 입력시 조회되는 '총급여'가 실제 지급받은 총급여와 다르며, 상여를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가 있습니다.

A : 총급여는 본교 급여 총지급액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값으로 급여명세서의 금액보다 작습니다. 또한, **상여 항목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목들을 구분표기한 것**입니다. 본교에서 집계한 상여항목은 **아주대병원의 진료비/건강검진비 감액분(단,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 본인 감액분은 한도 내 비과세금액으로 처리), 본인 및 자녀 교직원 장학금, 복지카드 사용금액, 산학협력단/의료원 등에서 받은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Q7. 사용자 확정처리를 눌러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A : [사용자 확정 해제 요청]을 누르시면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제처리 하여 드립니다.

Q8. 2026년 1월말 면직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A : **본교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결과 세금징수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을 학교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환급액은 본교에서 사용하시던 급여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Q9. 2025년에 타기관에서 기타소득(혹은 연금소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A : 이번 연말정산은 '아주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타 기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정해진 법률(종합소득신고 대상소득 및 금액일 경우)에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10. 아주대에서 연구원으로 연도 중에 퇴사한 후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만약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는 2025년 전체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까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는 퇴사 이전의 연말정산과 재입사 이후의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퇴사 이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스템에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공제항목 및 제출증빙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구분		소득/세액공제 중복여부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연금저축		○	X
보험료		○	X
의료비		○	○
기부금		○	X
교육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전 아동만 공제대상)	△	○
	교복구입비	○	○

<부양가족명의 소득/세액공제 판단기준>

* 하기 ○ 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

항목	부양가족공제 판별요건 포함여부			공제대상자 범위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신용카드	○	X	○	○	○	○	○	○
보장성 보험	○	○	○	○	○	○	○	○
의료비	○	X	X	○	○	○	○	○
교육비	○	X	○	○	○	○	△(*1)	○
기부금 (*2)	○	X	○	○	○	○	○	○

(*1) 장애인인 직계존속/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만 공제가능

(*2)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명의로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능.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사회보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모기지대출 이자상환액)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단, 본인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Q11. 기부금 영수증을 팩스로 받은 사본을 제출해도 될까요?

A : 모든 영수증은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본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2.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 작년과 인적공제 대상자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13. 배우자(혹은 다른 부양가족)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나요?

A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2개 이상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을 제공한 기관(연금공단 등)에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에 따른 양도소득을 배우자 등에 귀속시킨 경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Q1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신청 하셔도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Q15.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Q16.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17. 2025년 5월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연도 중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공제대상에는 포함됩니다.

Q18.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9. 입사 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각 공제항목별로 상세(월별)내역으로 다운로드 하신 뒤 학교 연말정산 페이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은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0.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의료비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A : 의료비 공제는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올해 총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은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의 경우 아주대병원 의료비감액분이 총급여 및 의료비 공제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단,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 **한도 내 비과세금액으로 처리된 본인 감액분은 의료비 공제금액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1. 2025년 기중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대출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2017.1.1.이후 학자금 대출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동안 직계존속(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취업 이후 상환하는 때에 자녀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학생 학자금 대출

Q22.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2월에 납부하고 9월에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자녀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자녀(혹은 부양가족)가 취업의 사유로 연말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일 이전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 및 의료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비는 취업 전의 교육비이므로 자녀연말정산시 공제 불가)

Q23. 자녀가 외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외교육비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에서 환율조회/오늘의 환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Q24.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A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Q25.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도중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하기 전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26. 아주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A : 아주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